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2258호(號) 1934(昭和 9)년 7월 20일 금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375호(號)

1930(昭和 5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74호(號)(조선국유철도화물운송규칙[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]) 중(中) 1934(昭和 9)년 9월 1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4(昭和 9)년 7월 20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별표(別表) 화물할인임률표(貨物割引賃率表) 조선내발착(朝鮮內發著)의 부문[部] 중(中) 면직물(綿織物: 면사[綿糸]를 주[主]로 한 교직물[交織物]을 포함[包含]함)의 항(項)을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면 직 물(綿織物) 면사(綿糸)를 주(主)로 한 교 직물(交織物)을 포함(包含)함	부산진(釜山鎭), 영등포(永登 浦), 인천(仁川), 목포(木浦)	국선(局線) 및 연대선(連帶線)	소화물급 [小口扱]	3백1킬로미터[糶] 이상(以上)
				2할(割)5푼(分) 감(減)
				5백1킬로미터[糶] 이상(以上)
				3할(割) 감(減)
8백1킬로미터[糶] 이상(以上)				
3할(割) 5푼(分) 감(減)				